



미주리주 보건/노인복지부 - WIC 및 영양 서비스  
**참여자의 권리 및 책임 - Korean**

2019년 2월 1일부 발효

**본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:**

- ✓ 영양 교육, 건강 및 모유 수유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원과 격려를 받는 권리.
- ✓ 인종, 피부색, 출신국, 연령, 신체장애 또는 성별에 상관 없이 동일한 WIC 프로그램 수혜자격 및 참여 기준.
- ✓ 프로그램 수혜자격이나 WIC 혜택에 관해 WIC 기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권리. 60 일 내에 지역 WIC 기관이나 미주리주 WIC 프로그램(P.O. Box 570, Jefferson City, MO 65102, (800) 392-8209)에 연락하여 공정 심리를 요청하는 권리.

**본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:**

- ✓ 본인의 대리인들과 본인은 증명서 교부 시 설명들은 바와 같이 WIC 혜택을 바르게 사용하여 공인 WIC 소매점에서 WIC 에서 승인한 식품을 구입합니다.
- ✓ 이사하려고 계획하는 경우 담당 WIC 기관에 알려져 증명 확인서(VOC)를 교부받아 새로운 곳으로 가져가서 WIC 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.
- ✓ 이중 참여는 불법이므로 한(1) WIC 기관으로부터만 WIC 혜택을 받습니다.
- ✓ 혜택이 제공될 때에 WIC 혜택을 받습니다.
- ✓ WIC 및 식품점 직원들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합니다.

**MOWINS 시스템에서 본인의 전자 서명을 제공함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확인합니다:**

- ✓ 본인은 WIC 프로그램 하의 본인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통지를 받았습니디. 본인은 본인의 가구에 대해 제공한 정보 및 서류가 정확함을 증명합니다.
- ✓ 본인은, 미주리주 수석보건 책임자가 WIC 이외의 목적을 위해 나의 WIC 프로그램 참여를 공유하도록 허락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 이것은 WIC 및 기타 단체들이 WIC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입니다. 이 정보는 다음 사항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:
  -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의 수혜 자격 결정
  - 지원 활동 실시
  - 본인에게 DHSS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신청 절차를 용이하게 함
  - 본인이 이미 그들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, 교육 또는 복지 향상
  - 보건 필요 및 결과에 대한 대응 측정
- ✓ 본인의 WIC 혜택, 식품, 젓 짜는 기구 또는 조제우유를 팔거나, 교환하거나, 주는 행위는 참여자 위반이며 WIC 프로그램으로부터 클레임의 징수 및 변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.
- ✓ 증명서 교부 시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, 누락된 소득, 신분 또는 거주사항이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직접 선언합니다. 본인은 등록을 유지하고 WIC 혜택을 받기 위해 30 일 내에 동 서류를 제출하기로 동의합니다. 연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증명 정보가 필요합니다. 프로그램 당국자가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✓ 의도적으로 허위의 또는 오도하는 진술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잘못 전하거나, 감추거나, 알리지 않는 경우 부당하게 본인에게 지급된 식품 혜택의 가액을 WIC 주 기관에 지불하게 되거나 주 및 연방 법에 따라 민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

연방 민권법과 미농무부(USDA)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, 미농무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운영하는 미농무부, 산하 기관, 사무소, 직원 및 기관들은 미농무부가 실시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인종, 피부색, 출신국, 성별, 장애, 연령에 근거하여 차별하거나 이전의 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
프로그램 정보를 위한 대체 전달 수단(예: 점자, 큰 활자, 녹음 테이프, 미국식 수화, 등)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신청한 기관(주 또는 지방)에 문의해야 합니다. 청각 장애가 있거나, 난청이거나,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(800) 877-8339 번의 연방 릴레이 서비스를 통하여 미농무부에 문의하면 됩니다. 아울러,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.

프로그램의 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려면, [http://www.ascr.usda.gov/complaint\\_filing\\_cust.html](http://www.ascr.usda.gov/complaint_filing_cust.html) 이나 모든 미농무부 사무소에서 입수 가능한 미농무부 프로그램 차별 민원 서식(AD-3027)을 작성하거나 미농무부 앞으로 서신을 작성하여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서신으로 제공하십시오. 민원 서식을 요청하려면, (866) 632-9992 번으로 연락하십시오.

작성한 서식이나 서신을 아래와 같이 미농무부로 제출하십시오:

1. 우편: U.S. Department of Agriculture,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, 1400 Independence Avenue, SW, Washington, D.C. 20250-9410;
2. 팩스: (202) 690-7442;
3. 이메일: [program.intake@usda.gov](mailto:program.intake@usda.gov)

**참여자/보호자 서명\* \_\_\_\_\_ 날짜 \_\_\_\_\_**

\*서명을 MOWINS 에서 전자적으로 캡처하는 경우 이 서식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.